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서

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북구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통해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및 범위)

1. “갑”은 “을”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
2. “을”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을 추천한다.
 - 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나. 기타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계층
3. 지원범위 : 진단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4. “을”은 지원자격 및 범위를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 부터 “갑” 또는 “을” 중 별도의 중단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

제4조(협력사항)

1. “을”은 의료진료 대상자를 “갑”에게 추천한다.
2. “갑”은 사전에 “을”과 인원수 및 추천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

제6조(지원결과 통보 등)

“갑”은 대상자의 지원결과 내용을 “을”에게 통보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1. 본 협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2.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의료 관련 법규 위배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준수)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 본 협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5. 4 .

“갑” :

“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김영배 (인)